요약

개인교통수단, 단기로는 시민안전 위해 규제 중장기로는 지역 교통여건별로 맞춤형 대응

전동킥보드 · 세그웨이 등 개인교통수단, 계속 늘어 시민안전 위협

1인용 신개념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그 종류도 계속 다양화되며 젊은이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세그웨이와 같이 고가의 장비에서부터 전동 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같은 유형의 장비도 손잡이가 있기도 하고 안장이 부착되기도 하는 등 그 형태를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교통수단이 레저용뿐만 아니라 이동용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도로에서 운행 시 운전면허의 필요성이나 안전기준, 운행 가능한 공간 등을 명확히 알고 있는 이용자는 드물다. 현재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 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도로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으로 2종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한 채 차도로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는 물론이고 판매자나 대여업체에서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개인이 장치를 임의 개조해 속도를 지나치게 높여 운행하거나,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면허 없이는 운행할수 없는 16세 미만 아동에게도 탑승을 권유하는 등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행자 및 타 수단과의 사고 위험 때문에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중앙정부의 관련법 개정 대응해 서울시도 효율적 대책 마련 필요

중앙정부는 2017년 6월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에서의 운행방법을 규정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며, 동시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8년 1월에는 개인교통수단을 도시교통 수요관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조항을 신설하고 수요관리 수단에 추가하는 법률개정안도 발의하였다.

특히,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개정안에는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도로관리청이 일정 구간을 정하여 개인교통수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 차원에서 개인교통수단의 서울시 교통체계 내 위상과 역할, 기능과 성능 등을 고려하여 운행공간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Test-bed 구축 운영 등을 통해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잠재적인 위험요소, 안전시설의 설치 필요성 등을 사전에 파악해 도로시설물 정비 등 필요한 조치가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개인교통수단 중 전기자전거 등은 이동용 교통수단 활용 잠재력 커

개인교통수단은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나 이용자의 이용행태 조사결과를 고려해 볼 때 기술적으로 주행성능과 충돌 안전성이 비교적 좋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특정 제품군은 이동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도, 차도, 자전거도로 등 도로 공간별로 운행이 가능한 개인교통수단은 제품의 성능, 최고속도, 주행 및 충돌 안전성 등에 따라 차별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인교통수단과 보행자 충돌 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모든 개인교통수단의 보도 통행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손잡이가 없는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와 충돌 시 두 운전자 모두 상해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 제품의 자전거도로 통행은 제한하는 것이 좋다.

대중교통망 잘 갖춰진 서울시에선 대중교통 연계수단 역할은 미미

서울시에서는 버스,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고,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이미 다양한 수단이 5km 이내의 단거리 통행을 큰 무리 없이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로 인해 추가 비용 없이도 단거리 통행에 노선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주로 중단거리 통행에 이용되는 개인교통수단의 역할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군다나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버스와 도시철도의 수단분담률을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을 고려해 볼 때, 도시철도 연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노선버스와 경쟁하는 구도의 개인교통수단 활성화 정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서울시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도시철도역까지 도보거리가 지나치게 길거나, 노선버스 서비스가 열악한 지역, 노선버스의 통행 거리가 비교적 긴 지역 등에 한하여,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보조교통수단으로 개인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최근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한양도성 안 도심지역과 같이 승용차 통행을 억제하고, 도로 공간재편에 따른 버스 노선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개인교통수단 이용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문제 유발하는 승용차 통행의 일정 부분 대체 역할은 가능

도시 내 과도한 승용차 통행은 도로 위 혼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기오염, 소음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적극적인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승용차 통행은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기도 하다. 이에 서울시는 자동차보다 보행자 위주로 도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으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환경친화적인 개인교통수단이 승용차 통행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다면 여러 측면에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5km 이내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전체 승용차 통행의 17.6%를 차지하고

있고 평균 통행 거리는 3.58km로 나타났으며, 이 중 20~40대 젊은 층의 통행이 49%로 약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일부라도 개인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승용차 통행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 규제와 함께 개인교통수단 안전운행 위한 미래환경 조성

최근 다양한 형태와 성능을 가진 수많은 개인교통수단 제품이 시중에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전문가들도 각 제품의 법적인 지위와 갖춰야 할 요건 등을 혼동할 만큼 아직은 관련 법제도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반 시민이나 이용자들도 현행법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소에 상관없이 운행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등 법제도가 마련되기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무분 별하게 운행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시민안전 측면에 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규제만할 수는 없다. 단기적으로 운행규제를 하더라도 중앙정부의 법제도정비 이후 개인교통수단과 타 교통수단, 보행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효과적인 운행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Test-bed 구축·운영을 통해 다양한 개인교통수단의 주행 안전성과 효용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개인교통수단 형태와 종류, 성능에 따라 적절한 운행공간을 제시하고, 운행공간별 적정 운행속도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을 미리 만들 어야한다. 이 지침에는 타 교통수단과의 분리 등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운행 가능 및 금지 공간에 대한 안내표지, 노면표지 등에 관한 사항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중장기: 공공 PM 도입 등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제도가 정비되어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는 제반 환경이 마련되고 개인교통수단 제품의 주행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여의도나 강남 일대처럼 승 용차 단거리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자동차 통행제한 및 도로 공간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도심 등을 대상으로 공공자전거와 같은 공공 PM(Personal Mobility) 도입을 통해 승용차 통행 감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파발역, 금천구청역, 상월곡역 등 도보 접근이 취약하고, 버스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노선이 있더라도 미처 서비스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등을 중심으로 개인교통수단이 보조연계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도시철도역사 내 또는 주변에 개인교통수단을 보관하고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공공이 마련하여 제공해 준다면, 개인교통수단을 소지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도시철도역까지 접근하거나 도시철도역에서 거주지까지 돌아가는 데 있어 보조연계수단으로 이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홍제역, 상월곡역 등 공공자전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만, 굴곡이 심한 지형적인 조건 등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빈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지역에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등을 활용하여 공공 PM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교통수단 운행 시 도로환경 정비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해야

향후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집중된 지역이나 대중교통 보조연계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그리고 지형적인 조건으로 공공자전거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지원하는 지역 등에서 공공 PM 및 개인보유 개인교통수단이 안전하게 운행되려면 반드시 도로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개인교통수단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서울시의 자전거도로는 단절된 곳이 많아 이동용 교통네트워크로 주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교통수단이 도로 운행 시 자전거도로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차도(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차도를 이용할 때에는 주변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크면 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간선도로는 가능한 한 통행을 제한하고, 생활권 이면도로로 우회해서 통행하도록 안내하고 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에도 유동인구가 많은 이면도로는 운행속도를 보행속도와 비슷 하게 유지하도록 관련 지침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울시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낮추고, 자전거 등 중저속 교통수단이 많은 도로나 지역은 가장 오른쪽 차로를 특별히 저속차로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